

의안번호	2125926
의 퇴 인	하태경의원
회 답 일	2024. 1. 11.
추계번호	23C5057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(지원센터)	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권익보호 대상에 현행 대중문화예술인,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,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외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추가함	임의규정 (관련 사업의 확대 여부는 임의사항임)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(지원센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권익보호 대상 확대(안 제17조)

-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권익보호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,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권익보호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추가하고 있음
-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및 건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3월 설립되었고, 2023년의 경

우 15억 7,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운영, 대중문화예술인 등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, 대중문화예술 분야 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표]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 현황(2023년)

구분	사업내용	예산액(백만원)
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	대중문화예술 기획업 관련 정보 제공	100
대중문화예술인 등 법률자문	대중문화예술 분야 계약 등 법률자문 제공 (내부 변호사 통한 법률자문 진행)	-
등록제도 지원 및 경력증명서 발급	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	18
대중문화예술인 등 심리상담	대중문화예술인, 연습생, 관련 업계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	310
불공정 예방 프로그램 운영	불공정행위 예방 지원, 악플 피해 예방 캠페인 등	50
대중문화예술 분야 교육 운영	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및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	503
정책지원 연구 등	대중문화예술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사업 관리·운영	598
합계		1,579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권익보호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추가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권익보호 사업을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권익보호 사업을 위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